



오산시 의회소식

2008년 2월 1일 오산시의회 발행/발행인 의장 조 문환/편집위원장 장복실/경기도 오산시 성호대로 165(031-375-2874) <http://osancouncil.go.kr>

2008 戊子年

2008년 무자년 새해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신년사



오산시의회의장
조 문 환

존경하는 15만 오산시민 여러분! 대망의 2008년도 戊子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지속되는 고유가 행진과 국제금리의 상승,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개최, 2차 남북정상회담, 일본 후쿠다 내각의 출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비롯해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삼성비자금 문제,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범 도민투쟁과 제2 동탄신도시 계획에 따른 개발제한 철폐를 위해 삭발투쟁 등 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매우 어려운 한 해였고,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도 우리시가 심각하게 걱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출실적이 3,500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수출이 우리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는 어두운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경기의 양극화 현상은 서민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결과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희망찬 무자년 새해에는 경제가 활성화 되어 시민 모두가 넉넉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산시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戊子년 새해는 희망과 발전의 확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한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지역 내 산적한 문제 해결에는 의원들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중앙부처를 포함한 행정기관과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우리 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오산시 의회는 15만 시민의 대변자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

서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난 한 해 아쉬웠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모두가 한걸음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희망찬 戊子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어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 무자년 새해 메시지	02
● 제139회 임시회	03
● 제13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03
● 제140회 임시회	04
● 제14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04
● 제14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06
● 제1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06
● 제142회 정례회	08
● 제142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09
● 제1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0
● 「사진으로 보는」의정 활동	11



조 문 환 의장

지난 한해 베풀어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드리며, 오산시의회 전의원은 戊子年 새해에도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새로운도약 살고 싶은 오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기홍 부의장

2007년 한해동안 베풀어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戊子年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보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활기찬 의정 활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김미정 의원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살펴 주신 후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변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새삼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한 한해 되시길 소망 합니다.



윤한섭 의원

지난 한해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戊子年 새해에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찾아 뵙게 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명철 의원

2007년 정해년 한해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도약, 살고싶은 오산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찬 戊子年 새해에도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김진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의회 김진원의원 입니다. 의회에서 어느덧 6번째 새해를 맞습니다. 제가 편집위원장을 맡아 2005년에 첫 발간된 의회소식지도 벌써 7회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탄 신도시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집회참석 등 어려운 상황에서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대규모택지개발, 교육특구건설, 시립병원유치, 가장산업단지추가 조성 등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슬기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지지해주시고 응원해주십시오. 권력을 잡은 뒤 외모와 내면이 달라진 사울보다는 다윗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장복실 의원

생각만해도 편안하고 마음든든한 의회 활동 할 수 있도록 지난한해 베풀어 주신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무자년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임하길 소원 하며,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제139회 임시회

◎ 회 기 : 2007. 7. 10 ~ 7.13(4일간)

◎ 주요안건 :

1. 오산시 쉼터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2.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 채택
3.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6.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오산시 종합운동장·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오산시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는 정부의 경로 연금을 대체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국고 부담율을 40~90%로 정하려 한 것은 불합리 하여, 오산시의회 전의원은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 노인의 기초생활보장에 있음으로, 현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의 국비부담과 같이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안 채택』하여 건의문을 중앙부처에 송부하였으며 .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 위하여 여섯분의 의원 찬성으로 윤한섭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쉼터공원의 원활한 운영 및 장사시설 관리 및 주민서비스 제공에 만전기하기 위한 『오산시 쉼터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대원동 관할구역인 갈곶동 한솔 솔파크 및 청호동 자이 아파트의 신축 입주로 세대가 증가로 통·반을 신설을 위한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립중인 공설납골당 (쉼터공원) 사용절차, 사용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운영방침 마련을 위한 『오산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안』,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을 위한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의 효과적 수행 및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한 『오산시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 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영어능력향상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종합운동장에 라이트시설(조명탑)과 전광판이 설치됨에 따라 사용료 항목을 신설하고, 종합운동장의 전기료를 현실에 맞게 부과 하고자 하는 『오산시종합운동장·시민회관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하여 제정 조례안 4건, 개정 조례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하였음.

기초노령연금 국비부담비율 조정 건의문

정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및 현세대 노인빈곤 해소를 목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에게 월 8~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40~9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노령연금은 경로연금을 대체하여 '08. 1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신규 복지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관계법령(안)에 국가부담 비용을 결정하면서 재정자주도(총계규모) 및 노인인구비율을 감안하여 40~90%로 산정한 결과, 오산시의 경우 '05년 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가 86.2%, '06년말 노인인구 (7,263명) 비율이 5.3%로 평균 국가 부담비용은 경로연금의 국가부담율 7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부담률 80% 수준보다 훨씬 못 미치는 40%로 조정되어 기초노령연금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산시의 부담은 최고 2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정시 세외수입 중 특수한 여건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용도에 쓰여지는 부담금 수입을 제외될 수 있도록 조정 건의하고자 하며 10여년이 지난 지방자치제의 세입은 지방세 대비 국세의 비율이 20:80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05년부터 국가사무를 이양하면서 지원된 분권교부세는 국비가 지원되던 '04년 보다 '05년은 1억원, '06년은 10억원이 오히려 감액된 반면, 시비는 '05년 11억원, '06년 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함으로써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경직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경로 연금을 대체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지방비 추가부담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국고 부담율을 40~90%로 정하려 한 것은 불합리 하며,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목적은 보호가 필요한 빈곤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에 있음으로, 현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의 국비부담과 같이 80% 수준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아울러, 오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위와 같은 건의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기초 노령연금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예산심사와 연계하여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07. 7. 13.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제13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 : 장복실 의원 ◎간 사 : 이기흥 의원

◎심사기간 : 2007.7.11 ~ 7.12 (2일간)

◎심사결과 :

-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의결보류-
- 오산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안 대표발의 : 김미정의원
- 수정이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를 배우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

는 상태에서 관외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공설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안 제12조제2항제1호) 일부를 수정발의 하였음.

- 오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의결보류-
- 오산시 종합운동장·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주요 처리된 의안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안이유

- 「장사등에관한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 기 조성된 공설 및 공동묘지와 현재 건립 중인 공설납골당(습터공원)의 사용절차,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위장 전입자의 사전방지과 묘지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공설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과 범위를 사망일 현재 6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함(안 제12조).
- 나. 공설장사시설에 사용하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향후 무연고 발생 방지차원에서 최초 15년, 연장 3회 10년씩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최장 45년까지로 함(안 제14조).
- 다.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수납하고 특히,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 징수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라.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려사망자 등으로 사용료 면제대상을 최소화함 (안 제19조).

- 마. 공설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

- 화성열병합발전소(화성시 동탄면 소재)로부터 반경 5km이내의 주변지역(내삼미동, 외삼미동, 세교동, 양산동)에 대하여,
-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지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골자

- 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함 (안 제2조).
- 나. 세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함(안 제3조).

제140회 임시회

○ 회 기 : 2007. 9. 11 ~ 9.14(4일간)

○ 주요안건 :

-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 1.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4.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안

○ 주요내용

제14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장애인 사업예 전문지식과 인적자원이 풍부한 기관예 위탁 운영하여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기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오산시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관내의 의료병상 공급 부족 및 대형 종합병원의 부재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위한 부지매입으로『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변경하여 정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김 진원의원의 두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정례회운영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역사회 일원

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예 관한 조례안』,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립지원 등 다양한 여성복지 사업 추진을 위한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예 철저를 기하기 위한,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택지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택지개발로 인한 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위한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안』등이 제출되어 동의안 1건, 승인건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포함하여 제정 조례안 3, 개정 조례안 5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하였음.



제14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 : 이기흥 의원 ○간 사 : 김미정 의원

○심사기간 : 2007.9.12 ~ 9.13 (2일간)

○심사결과 :

-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예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 수정안 대표발의 : 장복실의원
- 수정이유
외국인에 대한 지원대상이 포괄적이었던 것을 거주외국인으로 구체화하고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호) 일부를 수정발의 하였음.
-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오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수정안 대표발의 : 김미정의원
- 수정이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장 중 휴게음식점에 대한 적용 정의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음식점에 비해 과한 감량의무를 완화하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안 제2조제2호) 일부를 수정발의 하였음..
-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안 대표발의 : 윤한섭 의원
- 수정이유

영어체험마을 수강료의 결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 반환절차에 있어서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안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일부를 수정 발의 하였음.



주요 처리된 의안

오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안이유

-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거주외국인의 지위(안 제3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나. 지원대상(안 제5조)
 - 거주외국인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함)
 - 한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다. 지원범위(안 제6조)
 -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라.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7조)
 -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의외국인 지원시책자문위원회”를 둠.
 - 위원수 : 10인 이내
 - 위원장 : 부시장
 -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개발국장 및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외국인지원업무 담당부서장
- 바. 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안 제14조)
 -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사.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오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40호, 2007. 6. 1 개정)에 근거,
- 시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되, 수의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세가지로 한정하고, 이 경우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 나. 일반회계 금고는 1금고(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 다. 금고 지정의 평가기준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금리, 시민이용의 편리성 등 5개 항목으로 함(안 제4조).
- 라.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위원장 : 부시장
 - 위 원 : 9인 이내
- 마.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며, 금고의 해지사유 발생시에는 오산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3조).
- 바. 회계별·기금별 자금운용 현황과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함(안 제14조).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학습동기를 유발함은 물론, 영어능력 향상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 세계의 다양한 문화 및 생활체험으로 영어를 즐겁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골자

- 가. 영어체험마을의 위탁운영(안 제8조).
 -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협약체결 :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 위탁기간 :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3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음.

나. 영어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어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정함(안 제11조).

라. 영어마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8조).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 위원장 : 시장
 - 부위원장 : 화성교육청 교육장
 - 당연직 위원 : 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 교육담당과장

- 위촉직 위원 : 영어교육관련 전문가 등

오산시음식물류폐기물관리예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및 근거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에 만전을 기하고,
-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현저히 적은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 나.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1).

제141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 회 기 : 2007. 10. 8 ~ 10.12 (5일간)

◎ 주요안건 :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5. 오산시영어체험마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도시계획시설(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 주요내용

제141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254억 26백 687천원 보다 304억 2천 44만원 증액된 3,558억 47백 127천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이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기흥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김명철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모범청소년 및 사회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위한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영어교육 서비스분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

설 위탁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오산시영어체험마을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부선철도 횡단도로를 개설하여 동·서 양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교통정체 해소 및 소통의 원활, 주민이동의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경부선철도횡단도로,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오산세교 택지개발사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제시한 국도1호선 확장 및 중로2-37, 2-38호선, 대로1-8호선의 도로를 개설하여 지역주민 편익도모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국도1호선, 녹지 및 광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미래의 사회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행정수요의 증·감을 분석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2007~201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 건』, 등이 제출되어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하여 제정 조례안 3, 의회의견청취 2건, 보고 1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하였음.



제1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 : 김미정 의원 ◎간 사 : 윤한섭 의원

◎심사기간 : 2007.10.9 ~ 10.11 (3일간)

◎심사일정 :

-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0월 4일 오산시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0월 9일

【제141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다. 상 정 일 자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0. 9) : 위원장·간사 선임,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0. 10) : 세부사항 설명·질의답변, 계수조정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0. 11) : 의결

- 제141회 오산시의회(임시회)(2007. 10. 12) : 제2차 본회의 의결

◎심사결과 :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에서 60억 56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11억 89백만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세중 주민세와 재산세에서 63억 15백만원, 지방교부세 37억 34백만원, 재정보조금 12억 61백만원, 지방채 6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세출부분에서는 보육시설지원·운영을 위한 민간이전 13억 76백만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 8억 7천만원, 갈곶동~동부대로간 도로개설공사 60억원, 도로표지판 및 유지보수 2억 5천만원, 오산천 장기발전 플랜연구용역과 오산천 생태공원 유

지관리 4억원, 시립병원 부지매입비 99억 4천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 9억원,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 14억 4천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 공기업 특별회계의 70억 14백만원 세입부분 중 상수도 특별회계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부담금이 4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26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가장지방산업단지(3단계)조성 설계비 부담금 3억 5천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시설투자충당금에 4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시설투자충당금에 27억 25백만원, 수청동 하수관거 정비에 2억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가장지방산업단지 조성 제 영향평가에 9억 72백만원, 예비비 5억 57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음.

주요 처리된 의안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발의자 : 이기흥의원등 7인 발의

◎제안이유

-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이 지역사회의 관심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 함(안 제3조).
- 나.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와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게재, 행사시 공적소개, 위문 및 격려 등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전적지 순례,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및 주차료의 감면, 진료비 감면, 보훈수당 지급 등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오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자 : 김명철의원 등 7인 발의

- 원안가결-

◎제안이유

-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생아와 영아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가. 출산장려금은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되,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영아별로 지원함(안 제3조).
- 나. 지원범위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경우로

함(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신청 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출산장려금 지원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도록 함(안 부칙).

오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안 - 원안가결-

◎제안이유

- 모범청소년(봉사활동, 학업·예능·체육우수자, 선행 청소년 등)에게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 사회에서 일탈한 청소년이 반성을 통하여 모범청소년으로 거듭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청소년 선도의 계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모범청소년 수상대상은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서 가정, 학교 및 사회에서 모범적인 청소년이거나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 등으로 함(안 제3조).

나. 모범청소년 선정은 각급 기관(학교장, 화성경찰서, 오산소방서, 동사무소 등), 청소년 지도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칭찬위원회에서 정함(안 제4조).

다. 모범청소년은 연 10명 이내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모범청소년으로 선발된 청소년은 청소년 수련캠프 등 각종 청소년 행사 시 혜택을 지원하며, 청소년 문화의 집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청소년칭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0조).

마. 청소년칭찬위원회는 청소년 칭찬 수상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성장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년 육성 사업 등을 건의함(안 제12조).

오산시영어체험마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안이유

- 오산시 영어체험마을을 건립함으로써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에 문화체험을 통한 어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국제화 시대를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
- 영어교육 서비스분야에 국내 최고 수준의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설의 신축과 위탁운영을 함께 추진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영어체험마을 조성

- 위 치 : 오산시 (구)청사부지(오산시 오산동 850-1)
- 조성면적 : 대지 4,741.3㎡
- 건물규모 : 4층(지상3층, 지하1층)
- 조성방법 : 신축(건물, 주차장, 놀이시설, 휴게시설, 체육 시설 등)

나. 영어체험마을 운영

- 대 상 : 오산시 관내 학생(18개 초교 / 3학년~6학년)
- 개원예정 : 2009년 3월(1학기 시점)
- 사업내용 : 비합숙, 단기형(주5일)전일통학형 영어체험 마을(센터) 운영
- 교육인원 : 연간 약 3,000명 이내

다. 위탁운영

- 위탁기간 : 2009. 3. 1 ~ 2012. 2.28(3년)
- ※ 위탁기간은 기간 만료 후 상호협약에 의거 연장(3년) 가능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 위탁장소 : 오산동 850-1 (구 시청사 부지에 건물신축)
- ※ 조성면적 : 4,741.3㎡
- 위탁 대상업체의 자격조건
 -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의 신축 시설 투자비 및 초기 기자재, 프로그램 등 위탁사업자 우선 부담

-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추진반을 확보한 사업자
- 우수한 원어민 수급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
- 외국어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으며, 오산시 영어체험마을 맞춤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능력을 갖춘 사업자
- 위탁사무내용
 - 영어체험마을 운영
 - 초기시설투자(신축) 및 교육 영어 교육 프로그램 (기자재 등) 개발
 - 우수한 원어민 수급 및 관리
 - 인건비, 강사섭외, 소모품 관리, 마케팅 등 일련의 운영 일체
-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 등 제반조치 사항



제142회 제2차 정례회

◎ 회 기 : 2007. 12. 3 ~ 12. 24 (22일간)

◎ 주요안건 :

1.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4.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6.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재상정)
7.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
10.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4.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6.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 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7.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18. 오산시전염병예방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9.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요내용

제142회 제2차 정례사회에 부의된 안건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2.41%인 381억 12백만원이 증액된 3,452억 54백만원으로, 200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3%가 증액된 3,473억 8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오

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한『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신장동복지회관 부지(국유지) 매입, 오산대학 인근 공영주차장 건설, 오산시공설장례식장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을 위한『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난 제13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서 의결보류 된『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및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육성·보급하기 위하여 장복실의원이 발의한『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오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을 결정, 통보된 금액을 관련조례에 반영하고자 이기흥의원이 발의한『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미정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 원활한 임·정례회의 운영을 위해 의안의 제출·발의 및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김진원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새로운 주소체계를 통하여 누구나 쉽게 건물 등을 찾을 수 있도록 생활주소(도로명+건물번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수수당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26개 조례 일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중복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한 『오산시 분노처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차 정례회에 제출된 예산안 2건, 승인안 1건, 계획안 1건, 보고 1건, 의원발의 조례안 포함하여 제정 조례안 3, 개정조례안 9건, 폐지조례안 2건 총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 처리하였음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 : 윤한섭 의원 ◎간 사 : 김명철 의원

◎심사기간 : 2007.12.18 ~ 12.21 (4일간)

◎심사결과 :

1. 오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재상정) - 원안가결-
2.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오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오산시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 5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 6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7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8 오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 수정안 대표발의 : 김진원 의원
- 수정이유

-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위원의 인원수를 정함과 동시에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오산시새주소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안 제26조제1항 및 제3항), 일부를 수정 발의 하였음
- 9 오산시 노인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10. 오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1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2.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3. 오산시전염병예방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14. 오산시 분노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요 처리된 의안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 상정)

▶ 발의자 : 윤한섭의원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위한 지원사업 및 대상, 방법 등의 명문화화를 통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시책을 체계화하여
-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함.

◎주요골자

가. 지원대상을 정함(안 제2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저소득 및 독거노인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등 행사 참여자

나.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3조)

-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
- 노인복지시설의 기본적인 비품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저소득·독거노인에게 명절, 노인의 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

오산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 장복실 의원

◎제안이유

-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권장·육성·보급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시설운영자가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 교육을 위해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발의자 : 김진원의원

◎제안이유

- 원활한 임·정례회의 운영을 위해 의안의 제출·발의 및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주요골자

- 가. 「지방자치법」(2007.5.11)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안 제1조·제9조의2제1항·제14조제2항·제70조제1항·제82조제1항 및 제3항)
- 나.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조항 신설 (안 제19조제2항).
- 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시 의원질문요지서 송달시간 및 시장의 답변 요지서 제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문 신설 (안 제67조의2).

◎주요 개정규칙안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제2항 모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의2 (집행부에 대한 질문)

- ① 임·정례회의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집행부 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대집행부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한다.
-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수 없다.
- ④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보충 질문을 허가할 수 있다.
- ⑤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방식 및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72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집행부는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24시간 전까지 해당의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142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위원장 : 김진원 의원 ◎간 사 : 장복실 의원

◎심사기간 : 2007.12.5 ~ 12.14 (10일간)

◎심사일정 :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21일 본 예산안 오산시장 제출
- 2007년 12월 10일 제1차 수정안 오산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142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7.12. 3) : 제1차 본회의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5) : 위원장·간사 선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 제2차~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6~12.10) : 사항별 설명, 질의·답변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1) : 수정안 제안설명, 사항별설명, 질의·답변
- 제6차~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2 ~ 12.13) : 계수조정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7.12.14) : 의결

◎심사결과 :

-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12.41% 증가한 예산안으로서 381억 12백만원이 증액된 3,452억 54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결과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안 대비 6.2%인 215억 71백만원이 증가된 3,668억 25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다.
 - 2008년도 예산액 : 366,825,385천원

(일반회계: 212,352,961천원, 특별회계: 154,472,424천원)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21일 제3회 추경안 오산시장 제출
- 2007년 12월 10일 제1차 수정안 오산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2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142회 오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7.12. 3) : 제1차 본회의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1)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2) : 계수조정
-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 12. 14) : 의결

◎심사결과 :

-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15억 천 8백만원, 특별회계 949억 8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93억 4천 백만원이 감소된 총 3,465억 6백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심사한 결과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524억원, 특별회계 949억 8천7백만원 으로 기정예산액 3,465억 6백만원 대비 8억 8천 백만원이 증액된 3,473억 8천 7백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다.
 -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 347,387,319천원
 - (일반회계: 252,400,222천원, 특별회계: 94,987,097천원)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남부사회복지관 개관식
2007.8.27 오산시 남부사회복지관 개관식에 참석하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은 운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산시 장애인 협회 회장단 이취임식
2007.12.7 지체장애인협회와 장애인정보화협회 오산시 지회장의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장애우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을 위한 정보화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헌신하신 이재학 회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 하고, 새로 취임하는 박종엽, 강명모 회장을 축하했다.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오산시의회 전의원은 2007. 10.5~10.7까지 안산시에서 개최한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방문하여 축구외14개 종목에 참가한 오산시 임원 및 선수단을 격려했다.



2007.10.14 제4회 오산독산성전국하프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여 대회에 참여한 1만여 시민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산독산성전국하프마라톤대회가 나날이 발전하여 오산시의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오산쉼터공원개관식

2007. 12. 24 오산시의회 전의원은 오산시립 쉼터공원 개관식에 참석하여 혐오시설 설치반대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등, 민원인 설득에 설득을 거듭해 오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 노고에 감사드리고, 쉼터공원 개관을 축하했다.



▲롯데 물류 준공식

2007.11.21 국내 최대규모의 롯데오산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여 최첨단 시설로 건립된 롯데오산물류센터 준공을 축하하고 오산지역주민들에게도 고용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2007.11.26 오산시의회 전의원은 화성교육청을 방문하여 2007년 4월부터 화성교육청에서 추진한 통합교육청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2곳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명칭을 교육청이 소재한 지역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경기도내에서 오산시, 화성시의 관할지역 교육청만이 기존의 화성교육청 명칭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통합교육청 명칭 추진과 관련하여 화성교육청에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양산동 경노당 개관식

2007.12.18 양산동 노인회관 준공식 및 현판식에 참석하여 노인회관 준공 축하



▲농업인의날행사

2007.11.16 제12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하여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축하



▼2007. 10. 24.(수) 고현초교 개교식에 참석하여 개교를 준비해 오신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운영위원회 등 관련단체 회원 노고 치하



▲2007. 12. 28(금) 시청~부산동간 도로개설공사 준공식에 참석하여 제2 동탄신도시 계획에 따라 행위제한에 걸려 연결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나, 행위제한기간에 철저히 준비하여 가능한 빠른 기간 안에 롯데물류센터 옆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지난한해 동안 오산~부산동간 도로개설에 수고한 시공사 및 관련 공직자에게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다.



▲궐동 공영주차장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고현동 도시계획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청취

▶오산시의회 김미정의원은 2007.11.15~11.17까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운동본부와 함께 25톤 트럭 8대에



연탄 5만장을 싣고 금강산 인근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마을 등의 북한 동포들에게 사랑의 연탄을 전달하였다.



◀2007. 9. 17(월) 수청근린공원 1단계조성 기공식에 참석하여 시 관계공무원 및 시공사에 수청근린공원 조성에 있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원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하고, 공사중에도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공사장 안전에도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07. 9. 7(금) 제8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Workshop에 참석하여 우리 사회의 밝은 빛으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 및 복지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했다

▶구시청사에 건립예정인 영어체험마을 조성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지원담당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 개관식
누읍동 청소년 공부방 개관식에 참석하여 학습환경이 열악했던 초평동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면학분위기 조성 위한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수고한 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

▲세마하수종말처리장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



▲운암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으로부터 사업진행 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청취



▲오산시의회 전의원은 2007년 오산시의회 폐회연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확인과 불합리한 법규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은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15만 시민의 눈과 귀와 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드리고, 무자녀 한해에도 전의원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로 다가 가겠다고 다짐했다.

의 회 전화번호

● 의장실 :
• TEL : 375 - 2870
• FAX : 375 - 2875

● 부의장실 :
• TEL : 375 - 2871
• FAX : 375 - 2875

● 의원사무실 :
• TEL : 375 - 2872
• FAX : 375 - 2875

● 의회사무과 :
• TEL : 375 - 2874
• FAX : 375 - 2875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http://osancouncil.go.kr>